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009

발의연월일: 2022. 3. 30.

발 의 자: 김주영・유기홍・윤재갑

최기상 • 오영환 • 어기구

이원욱 · 양향자 · 윤후덕

고용진 • 이성만 • 박홍근

윤건영 · 정일영 · 유정주

강민정 의원(16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 중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2022년 12 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일정기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소득 안정과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.

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규정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2 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(안 제7조제1항). 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 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	제7조(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
감면)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	감면) ①
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	
기업에 대해서는 <u>2022년 12월</u>	<u>2027년 12월</u>
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	31일
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	
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	
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	
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(제3호	
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	
한다)을 감면한다. 다만, 내국	
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	
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	
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	
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	
율을 적용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